

상조회 운영 규정

(주)데이터솔루션 상조회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주식회사 데이터솔루션(이하 "상조회"라 한다)상조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1. "상조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의 정신을 함양하고 사원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2. "상조회"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① 회원의 복지후생 사업

② 회원의 경조 발생 시 경조금 지급

③ 동아리 활동 지원

④ 출자금의 대여사업

⑤ 기타 "상조회"의 목적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사업

제2장 회원 및 회비

제3조(회원의 자격)

1. 당사의 정규 임직원으로 입사와 동시에 회원자격을 취득하며 퇴사와 동시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2. 휴직(또는 정직)한 회원은 그 자격이 정지된다. 단, 월정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휴직 회원 및 출산으로 인한 육아 휴직 시 회원자격은 유지된다.

3. "상조회"의 회원은 회사 직원 중 상조회에 가입한 모든 직원으로써 회비를 1회 이상 납입한 자로 한다.

제4조(회비)

1. "상조회"의 운영은 회원의 출자금에 의한다.
2. 회원의 출자는 매월 회원의 지급받는 급여에서 아래에 명시된 금액을 차등하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① 사원 : 7,000원
 - ② 대리 & 선임 : 10,000원
 - ③ 과장 & 책임 : 15,000원
 - ④ 부장 & 수석 & 매니저 : 25,000원
 - ⑤ 임원 & 프로 : 30,000원
3. 상조회 단체 명의로 회비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4. 회비 예치 주거래은행은 당해 상조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회원이 당해 월의 급여 지급일 이전에 가입 및 탈퇴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월의 출자금을 정수한다.
6. 회원이 퇴직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할 시에는 납입한 출자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제3장 임원 및 운영위원회

제5조(임원)

"상조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둘 수 있으며 가입 회원 수에 따라 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 회장 - 1명
- 총무 - 1명
- 간사 - 상조회장의 재량으로 결정

제6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임원진의 선임 및 임기는 아래와 같이 한다.

- "상조회" 회장은 회원이 추대하여 직선에 의한 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회장은 총무와 간사 등 집행위원을 선임하며, 모든 집행부의 임기는 2년 단임제로 한다.
- 회장의 사직이나 유고시 혹은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회기 중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상조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상조회의 각종 행사 및 사업 발생 시 회장의 명에 의해 활동하며 회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총무는 상조회비의 입·출입을 관리하고, 매월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④ 간사는 회장 및 총무를 보좌하고, 상조회의 각종 행사 및 사업 발생 시 회장 및 총무의 명에 의해 활동한다.

제8조(위원회 소집)

-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 소집 시 또는 상조회장이 승인한 경우(회의비, 식비, 기타), 상조회비에서 지출하며 총무는 사용한 비용에 대해 지출결의 후 보관한다.

제9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 일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0조(위원회 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① 회칙 및 기타 "상조회"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상조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③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운영에 필요한 주요한 사항 등

제4장 사 업

제11조(사업)

"상조회"는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범위)

"상조회"의 사업은 회원의 후생복지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① 적립된 회비의 철저한 관리로 회비증액사업
- ② "상조회"의 회비가 일정부분 적립되었다고 회장이 판단 될 때 회원 애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실적과 결산)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은 다음해 1월 이내에 작성하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원에게 메일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회원후생복지

제14조(후생복지)

"상조회"는 회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시행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상조회" 회칙에 근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애경사 지원)

- ① 회원이 애경사가 있을 시 다음과 같이 적립된 회비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그 책무는 회장의 책임 하에 총무가 시행한다.
- ② 상조회를 대표하여 회원의 애경사에 참석할 시, 교통비 및 체류비는 상조회장이 승인한 간사에 한하여 실비로 정산한다. (영수증 및 증빙 가능한 서류 첨부)

제16조(애, 경사 지원범위)

- ① 애, 경사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회원입원(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3일 이상 입원에 한함) – 입원비 지원금 200,000원
 - 회원결혼 - 500,000원
 - 회원 및 배우자 부모의 육순 또는 칠순 또는 팔순 경사(1회에 한함) - 300,000원 (실 경사일 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등록 기준의 경사일과 실 경사일이 다를 경우에는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회원사망 – 일회용품(1Box) 및 1,000,000원
 - 회원의 배우자 사망 – 일회용품(1Box) 및 1,000,000원
 - 회원의 자녀 사망 – 일회용품(1Box) 및 1,000,000원
 - 회원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일회용품(1Box) 및 500,000원
 - 회원 및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 일회용품(1Box)
 - 회원의 자녀 출생 – 자녀 당 500,000원
 - 회원 간에 결혼할 경우 입원을 제외한 경조비 지원은 양쪽 회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일회용품은 1Box 지원)
 - 경사의 지원은 회원이 초대할 경우 지원하며, 애사는 회원이 그 사실을 알릴 경우에만 지원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은 적립된 회비 범위 내에서 시행하며, 지원 금액 및 지원 항목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 및 추가할 수 있다.
- ③ 경조금의 청구권은 권리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 ④ 회원의 경조금 신청의 결제는 회사의 전결규정 및 시스템 사용에 준하여 운영하며 증빙을 위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는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에 "상조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장기근속 포상 및 자녀입학금 지원)

- ① "상조회"는 회원들의 더 나은 후생복지 및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하여 상조회 지원 항목을 추가한다.
 - 장기근속자 포상 – 300,000원(5년 주기)
 - 회원의 자녀 입학 지원 – 초등학교 10만원 / 중학교 20만원 / 고등학교·대학교 30만원
-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은 적립된 회비 범위 내에서 시행하며, 지원 금액 및 지원 항목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 및 추가할 수 있다.

제18조(동호회 지원)

- ① "상조회"는 회사 내 동호회의 총괄 관리 및 운영에 관해 권한을 가지며, 제반 규정은 "동호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 ② 활동이 인정되면 동호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월 활동 비용을 지급한다.
 - 월 활동 비용 : 1인 기준 15,000원
- ③ "상조회"는 연간 2번(상반기, 하반기) 동호회 운영 지원금을 지원한다. 단, 지원금은 각 동호회에서 "(반기별)동호회 활동 보고서 및 결산 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대상 기간 동안 3회 이상 활동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 동호회 회원 수가 5~9명: 300,000원
 - 동호회 회원 수가 10명이상: 600,000원

④ "상조회"는 동호회 활동 보고서 및 결산 보고서를 토대로 동호회 중 우수동호회를 선정하여 포상한다. 지원 금액 및 지원 항목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 및 추가할 수 있다.

- 우수동호회 포상금 : 50만원

제19조(물품구입 및 지급)

① "상조회"는 회비가 일정부분 적립되었다고 총무가 회장에게 보고하여 확인 될 경우 회원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회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물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20조(자산의 구성)

① "상조회"의 자산은 회원의 적립금으로 한다.
② 향후 수익사업 진출 시 그 수익금도 자산에 포함한다.

제21조(회계연도)

"상조회"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동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자산의 관리)

"상조회" 회장은 회칙에 의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3조(결산보고 등)

"상조회" 회장은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서 등을 회계연도 마감 후 1개월 이내에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체 공지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부 칙

1. 상조회 회원은 친목 도모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단합대회 및 체육대회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전 회원에게 보고한다.

- 2002년 1월 1일 제정
- 2008년 4월 23일 개정
- 2009년 1월 1일 개정
- 2009년 4월 8일 개정
- 2010년 1월 20일 개정
- 2014년 10월 31일 개정
- 2018년 1월 30일 개정
- 2018년 12월 31일 개정
- 2019년 1월 21일 개정
- 2020년 9월 29일 개정
- 2023년 1월 12일 개정